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40
----------	-------

발의연월일 : 2026. 5. 21.

발 의 자 : 정진욱·양부남·이개호
박해철·문금주·조인철
권향엽·이언주·안도걸
박균택·조계원·정준호
김 윤·김준환·장종태
전진숙·황정아·송재봉
이광희·한정애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18 탕크데이’ 행사를 진행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희화화하였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음.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적

역사로서, 이를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 ② (생략)</p>	<p>제8조(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